국가첨단산업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유의동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2810

발의연월일: 2021. 10. 8.

발 의 자:유의동・구자근・김기현

김영식 · 송석준 · 양금희

이 영・정찬민・조명희

추경호 • 한무경 의원

(119]

제안이유

반도체・인공지능・바이오・수소 산업 등 첨단산업의 성장이 국가 안보와 직결된다는 인식 아래 세계는 미래 산업의 주도권 확보를 위한 치열한 경쟁에 돌입하고 있음. 최근 미국에서 미래기술과 과학・연구 분야 등에 최소 2천억 달러(한화 약 230조원)를 투자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미국 혁신경쟁법(United States Innovation and Competition Act)」이 상원을 통과하였고, 중국도 반도체・인공지능・바이오 등 7대 첨단산업에 집중적인 투자를 할 것을 선언한 바 있음.

반면 주요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첨단산업과 관련 기술에 대한 투자가 미비한 실정임. 최근 국내 기술 수준(2020년 기준)이 중국과 비슷하다는 조사 결과가 보고되어 중국과의 기술 격차가 사실상 사라진 것으로 나타나는 등 기술의 연구·개발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와 지원이 시급한 상황임. 특히 우리나라가 기술 우위를 선점하고 있는 반도

체·디스플레이 등의 분야에서 기술 추월이 발생하면 관련 산업의 수출 의존도가 매우 높은 우리 경제가 심각한 타격을 입을 우려가 있음.

이처럼 첨단산업과 관련 기술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투자가 절실한 상황임에도 그 근거가 되는 개별 법률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임. 국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첨단산업 분야를 지정하고 기술개발, 인력육성·투자 등 여러 방면에서 적극적인 지원정책을 펼쳐 첨단산업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이에 「국가첨단산업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함으로써 첨단기술의 연구 및 개발, 산업인력 양성, 특화단지 조성, 규제 완화 등 각종 지원정책과 특례의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첨단산업에 대한 체계적인지원 시스템을 구축하여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성장과 국가 안보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이 법의 지원대상이 되는 국가첨단기술 및 국가첨단산업과 국가첨 단산업 특화단지를 정의함(안 제2조).
- 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가첨단산업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3년 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함(안 제5조).
- 다. 국가첨단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첨단산업경쟁력강화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 고, 업계와 전문가의 의견을 효율적으로 수렴하기 위한 소위원회와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한 실무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함(안 제6조).

- 라. 국가첨단산업 관련 기업의 고충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규제 및 관계법령의 개선에 관한 규정을 마련함(안 제7조 및 제8조).
- 마. 국가첨단산업에 관련된 정보의 축적 및 활용 등을 위하여 관련 통계작성 및 종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운영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9조 및 제21조).
- 바. 국가첨단산업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해외 우수인력의 유치·고용 보조금의 지급 등 인력 확충 및 고용에 관한 지원정책의 근거를 마 련함(안 제10조부터 제17조까지).
- 사. 국가첨단기술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함(안 제18조).
- 아. 국가첨단산업 관련 기업의 창업과 제조시설 및 기반시설 설치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19조 및 제20조).
- 자. 국가첨단산업과 관련 산업과의 협력 및 국제교류 등에 필요한 근 거를 마련함(안 제22조 및 제23조).
- 차. 국가첨단산업 지원에 필요한 조세감면 등 각종 특례를 규정함(안 제24조부터 제30조까지).
- 카. 국가첨단산업 특화단지의 조성 및 사업시행의 근거와 특화단지에 대한 각종 특례를 규정하고, 특화단지 내 협력사업과 특화단지 운 영성과의 관리 등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함(안 제31조부터 제46조까

지).

타. 국가첨단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첨단산업경쟁력강화 특별회계의 설치 근거를 마련함(안 제47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유의동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808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813호),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812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81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가첨단산업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첨단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국가첨단산업 특화단지를 조성함으로써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경제의 선순 환과 국가안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국가첨단기술"이란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른 첨단기술 중에 서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국가 차원의 투자 및 육성이 필요한 기술로서 제6조에 따른 국가첨단산업경쟁력강화위원회가 지정하는 기술을 말한다.
- 2. "국가첨단산업"이란 국가첨단기술의 연구·개발과 국가첨단기술을 적용한 소재·부품·제품·서비스의 개발·생산 등에 관련된 산업으로서 제6조에 따른 국가첨단산업경쟁력강화위원회가 지정하는 산업을 말한다.
- 3. "국가첨단산업 특화단지"란 국가첨단산업 관련 연구시설 및 산업 시설이 집적화된 지역으로서 제31조에 따라 조성된 산업단지를 말한다.

-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첨 단산업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국가첨단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첨단산업 관련 기업과 국가첨단기술 전문인력이 국가첨단산업의 발전에 지속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산업 및 활동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국가첨단산업에 대한 지원 및 특례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이법에 따른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되는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국가첨단산업 지원을 위한 추진체계

- 제5조(국가첨단산업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산업통상 자원부장관은 국가첨단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국가첨단산업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국가첨단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 및 중장기 발전 전략
 - 2. 국가첨단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책의 수립 및 정비

- 3. 국가첨단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 및 보급
- 4. 국가첨단산업과 관련된 인력 유치 및 양성
- 5. 국가첨단산업과 관련된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 6. 국가첨단산업과 관련된 전력·용수·폐수처리·도로 등의 정비· 확충 등 산업기반 조성
- 7. 국가첨단산업의 경쟁력 강화 시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의 운용
- 8. 국가첨단산업 특화단지의 설치계획
- 9. 국가첨단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회적 공감대의 형성
- 10. 그 밖에 국가첨단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6조(국가첨단산업경쟁력강화위원회) ① 국가첨단산업의 경쟁력 강화 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 로 국가첨단산업경쟁력강화위원회(이하 "첨단산업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1. 기본계획의 수립
 - 2. 기본계획 이행실적 점검 및 평가
 - 3. 국가첨단기술의 지정
 - 4. 국가첨단산업의 지정
 - 5. 제33조에 따른 특화단지 조성 실행계획의 승인

- 6.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국가첨단산업 경쟁력 강화 관련 정책 조정·협력 및 지원
- 7. 국가첨단산업 관련 기업 등의 고충처리
- 8. 국가첨단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관계 법령의 개선 권고
-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 1.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 3.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른 첨단기술과 관련 산업에 관하여 전 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산업계·학계·연구기관 등에 종사하는 사 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사람
- ③ 위원회에 간사위원 1명을 두며, 간사위원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된다.
- ④ 국가첨단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관련된 주요 사항에 대한 업계와 전문가의 의견을 효율적으로 수렴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 다.
- ⑤ 첨단산업위원회에서 심의·조정할 사항을 미리 검토하고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다루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⑥ 그 밖에 첨단산업위원회, 소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국가첨단산업 관련 기업 등의 고충처리) ① 국가첨단산업 관련

기업 등은 첨단산업위원회에 규제의 폐지 또는 개선 등을 신청할 수 있다.

- ② 첨단산업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접수된 내용을 심의하여야 한다.
- ③ 첨단산업위원회가 제2항에 따른 심의 결과 규제의 완화 또는 특례의 부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정규제기본법」 제17조 및 제17조의2에 따라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규제개혁위원회(이하 "규제개혁위원회"라 한다)에 규제 정비를 요청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④ 제3항에 따라 규제 정비를 요청받거나 의견을 제출받은 규제개 혁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 또는 제출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규제기본법」 제18조에 따른 기존규제의 심사를 하여 야 한다.
- 제8조(관계 법령의 개선 권고 등) ① 첨단산업위원회는 국가첨단산업 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관계 법령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을 관장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개선 을 권고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개선 권고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첨단산업위원회의 권고를 존중하여 해당 법령을 개정하여야 한다.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가첨단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관련된 법

령의 합리적인 개선을 위하여 해당 법령을 관장하는 관계 중앙행정 기관의 장에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 제9조(국가첨단산업 관련 통계의 작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가 첨단산업 육성을 위하여 국가첨단산업에 관한 통계를 작성하여 관 리할 수 있다.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 및 관리 업무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업무의수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3장 국가첨단산업 기반조성

제10조(계약에 의한 직업교육훈련과정 등의 설치·운영 지원)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가첨단산업 관련 기업의 수요에 맞는 분야별맞춤형 인력 양성을 위하여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산업교육기관(이하 "산업교육기관"이라 한다)에 같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직업교육훈련 관련 과정또는 학과 등(이하 "직업교육훈련 과정등"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가첨단산업 관련 직업교육훈련 과정등을 운영 중이거나 제1항에 따라 직업교육훈련 과정등의 설치를 요청받아 이를 설치하려는 산업교육기관의 장에게 산업체 부담금의일부 및 학생 등록금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을 받는 산업교육기관의 장은 직업교육훈련 과정등을 설치·운영하거나 폐지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그 설치·운영계획 또는 폐지계획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 게 신고하여야 한다.
- 제11조(국가첨단기술 특성화대학의 지정 등) ① 정부는 국가첨단산업 에 필요한 국가첨단기술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첨단기술 특성화대학 또는 특성화대학원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양성인력의 정원을 정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대학 원 및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
 - 2.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 3.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 4.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 5.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
 -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국가첨단기술 특성화대학 또는 특

성화대학원의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라 국가첨단기술 특성화대학 또는 특성화대학원으로 지정받은 기관은 「고등교육법」 제32조에도 불구하고 학생의 정원 을 추가적으로 증원할 수 있다.
- ④ 제1항에 따른 국가첨단기술 특성화대학 또는 특성화대학원의 지정 기준 및 절차와 제2항에 따른 지원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2조(국가첨단산업아카데미)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가첨단산업에서 수급을 필요로 하는 국가첨단기술 전문인력 양성 등을 위하여 첨단산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첨단산업관련 기관 또는 법인을 국가첨단산업아카데미로 지정하여 운영하게할 수 있다.
 - ② 국가첨단산업아카데미는 다음 각 호의 국가첨단산업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할 수 있다.
 - 1. 국가첨단기술 전문인력의 양성
 - 2. 국가첨단산업 관련 기업이 필요로 하는 전문인력의 위탁 교육
 - 3. 국내외 국가첨단기술 전문인력 양성기관과의 양성시스템의 교류 및 협력사업
 - 4. 국가첨단산업 관련 생산기술에 관한 교육ㆍ훈련
 - 5. 그 밖에 국가첨단산업 전문인력 양성과 관련하여 산업통상자원부 령으로 정하는 사업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가첨단산업아카데미가 제2항에 따른 사업을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 ④ 그 밖에 국가첨단산업아카데미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 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 제13조(국가첨단기술 전문인력의 교육훈련)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가첨단기술 전문인력이 과학과 기술 환경의 변화에 적응하고 연 구능력 등을 지속적으로 계발·향상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을 실시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첨단기술의 동향 파악
 - 2. 첨단기술 및 새로운 연구개발 방법론을 습득하기 위한 전문가 회의 및 세미나
 - 3. 국가첨단기술 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사항
 - 4. 국가첨단산업 관련 경영에 관한 사항
 - 5.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가첨단기술 전문인력의 능력 계 발·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기관에 재직하고 있는 국가첨단기술 전문인력이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고, 그 교육훈련의 결과를 인사관리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의 실시기관, 실시방법 및 실시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4조(퇴직한 국가첨단기술 전문인력의 기능·지식의 활용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퇴직한 국가첨단기술 전문인력이 보유한 기능·지식의 활용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 1. 퇴직한 국가첨단기술 전문인력에 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 2. 퇴직한 국가첨단기술 전문인력이 보유한 기술의 계승
 - 3. 그 밖에 퇴직한 국가첨단기술 전문인력의 활용과 해외 유출 제한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 시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담기관을 지정 할 수 있다.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한 전담기관에 사업의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5조(해외 우수인력의 발굴·유치 및 특례)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은 국가첨단기술 관련 해외 우수인력의 발굴·유치를 위하여 해외 대학·연구기관·기업의 전문인력에 관한 조사·분석을 할 수 있다.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해외 우수인력에 관한 정보의 활용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조사·분석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따라 활용할 수 있다.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해외 국가첨단기술인력의 유치를 위한 국

제네트워크 구축, 국제행사 참가 등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다.

- ④ 법무부장관은 「출입국관리법」 제8조·제10조의2 및 제10조의3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첨단기술의 개발사업 등에 종사하는 외국인에 대한 사증 발급의 절차와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자격별 체류기간의 상한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 제16조(국가첨단산업 분야별 전문인력의 수급동향조사) ① 산업통상자 원부장관은 대학 등 교육기관으로 하여금 학생 정원 운영 등에 반 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가첨단산업 분야별 전문인력 수급동 향에 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조사의 절차에 관하여는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3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 용한다. 이 경우 "소재·부품·장비"는 "국가첨단산업"으로, "기술인 력"은 "전문인력"으로 본다.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첨단 산업 분야별 전문인력 수급동향 조사전담기관(이하 "동향조사전담기 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수급동향에 관 한 조사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동향조사전담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2. 제6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정한 동향조사전담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⑥ 동향조사전담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7조(고용보조금 등의 지급)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첨단산 업 관련 기업의 원활한 인력확보와 고용창출 효과의 확대를 위하여 국가첨단산업 관련 기업에 고용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고용보조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 제18조(국가첨단기술 연구·개발의 촉진)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 가첨단기술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1. 국가첨단기술의 동향 및 수요조사
 - 2. 국가첨단기술의 연구·개발
 - 3. 연구·개발된 국가첨단기술의 권리확보 및 실용화
 - 4. 국가첨단기술의 연구·개발협력 및 정보교류
 - 5. 그 밖에 국가첨단기술의 연구·개발 촉진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첨단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기획하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산업기술혁신사업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재정법」 제38조제 1항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가첨단기술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첨단기술을 연구·개발하거나 이를 산업화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제19조(창업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첨단산업 분야의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국가첨단산업과 관련된 창업을 하려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 1. 창업자금의 지원 및 융자
 - 2. 국가첨단기술 연구·개발 성과의 제공
 - 3. 창업에 필요한 법률·세무·회계 등에 관한 상담 및 경영·컨설팅 지원
 - 4. 국가첨단산업 관련 우수한 아이디어의 사업화 지원
 - 5. 생산된 제품의 성분분석 · 품질검사 및 상용화 지원
 - 6. 시제품 생산 등 창업을 위한 시설 등 공간의 임대ㆍ제공
 - 7.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창업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20조(제조기반시설의 설치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첨단산업 관련 제조기반시설을 증설 또는 설치하는 기업 또는 국가첨단산업 특화단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제조기반시설(천재지변 등 사고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한 이중화 시설을 포함한다)의구축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 1. 「수도법」 제3조제10호에 따른 공업용수도
 - 2.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 1호에 따른 송·변전설비
 - 3.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폐수무방류배출시설 및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
 - 4. 그 밖에 국가첨단산업 관련 제조기반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이 필요한 경우예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각 호의 국가첨단산업 관련 제조기반시설의 설치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가 ·허가·승인 등에 필요한 행정지원을 하여야 한다.
- 제21조(종합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가첨단산업 관련 사업자에 대하여 기술·인력 및 산업동향 등 필 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국가첨단산업 현황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

로 관리하기 위하여 국가첨단산업과 관련한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 ·운영에 관한 업무를 산업통상자원부렁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 계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 에서 해당 업무의 수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③ 그 밖에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 범위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 제22조(관련 산업과의 협력 장려)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첨단 산업 관련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과 협력하여 새 로운 제품 또는 수요를 개발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이에 따른 협력 사업을 실시하는 자에 대하여 연구개발자금의 지원 및 세제혜택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첨단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쟁력 있는 산업생태계의 구축과 융복합 활성화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23조(국제교류 등의 사업과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첨단 산업과 관련한 국제적인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 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문인력의 국제교류, 국제공동연구 수행 등 의 사업을 시행하거나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24조(화학물질확인·등록 지원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가첨 단산업 관련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 도록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1. 「화학물질관리법」 제9조에 따른 화학물질확인
 - 2.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화학물질의 등록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가첨단산업 관련 사업자가 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전문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대통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전담하게 할 수 있다.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전담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 제25조(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에 관한 특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첨단산업 관련 사업자단체는 「화학물질관리법」 제33조에 따 른 안전교육을 해당 산업 특성에 맞는 교육과정으로 운영할 것을 환경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환경부장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해당 국가첨단산업에 대한 전문역량을 갖춘 교육기관을 별도로 지정하여 국가첨단산업 관련 인력이 산업 특성에 맞는 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제26조(「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 특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첨단산업 관련 기업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에서 첨단산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을 신설·증설 또는 이전하거나 업종을 변경할 수 있다.

- 제27조(「농지법」의 적용 특례)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농지법」 제3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첨단산업관련 기업이 농업진흥지역에 입지하려는 경우에는 첨단산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해제 시 첨단산업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농지법」 제30조에 따른 시·도 농업·농촌및식품 산업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 제28조(「수도법」의 적용 특례) ①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수도법」 제7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장설립이 제한되는 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첨단산업 관련 기업이 영위하는 공장(「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에 폐수 및 오수를 유입하여 처리하는 경우로한정한다)의 설립을 승인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공장설립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첨단산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제29조(「농어촌정비법」의 적용 특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농어촌정비법」 제2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장 및 산업단지 설립이 제한되는 지역에서 국가첨단산업을 영위하는 공장 및산업단지(「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에 폐수 및 오수를 유입하여 처리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의 설립을 승인할 수 있다.
- 제30조(조세감면 특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첨단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국가첨단산업 관련 기업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 법」,「지방세특례제한법」 등의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제4장 국가첨단산업 특화단지의 조성 등

- 제31조(국가첨단산업 특화단지의 조성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가첨단산업의 집적화를 통한 산업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하 여 국가첨단산업 특화단지(이하 "특화단지"라 한다)를 조성할 수 있 다.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특화단지를 조성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특화단지 사업시행자(이하 "사

업시행자"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 1. 시·도지사
-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기관
-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자본금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 ④ 사업시행자는 제33조에 따라 승인받은 특화단지 조성 실행계획 에 따라 성실하게 조성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사업시행자가 특화단지 조성 실행계획을 위반하거나 불성실하게 조성사업을 시행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무이행 권고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32조(사업시행자의 지정 취소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사업시 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 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 여야 한다.
 - 1. 사업시행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지정 또는 승인을 받은 경우
 - 2. 사업시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31조제4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

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조치에 따르지 아니한 경 우

- 3. 사업시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33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기한까지 특화단지 조성 실행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 한 경우
- 4. 사업시행자가 제34조에 따른 특화단지 조성 실행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의 시작 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승인받은 특화단지 조성 실행계획이 효력을 잃은 경우
- 5.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로 토지의 매수 등이 지연되어 시행기간 내에 특화단지의 개발을 완료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 6. 사업시행자가 이 법을 위반한 경우로서 공익을 위하여 사업시행자 지정의 취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새로운 사업시행자를 대체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의 지정에 관하여는 제31조를 준용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대체 지정된 사업시행자는 제33조제1항에 따른 특화단지 조성 실행계획의 승인에 관한 종전의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대체하여 지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 제33조(조성실행계획의 승인 등) ① 사업시행자는 제31조제2항에 따라 지정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화 단지 조성 실행계획(이하 "조성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업시행자가 조성실행계획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때에도 이와 같다.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성실행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첨단산업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사업시행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조성실행계획의 승인 기한의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④ 제1항에 따른 조성실행계획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라 작성된 지구단위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조성실행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보에 고시하고 관할 시·도 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관계 서류의 사본을 보내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서류의 사본을 받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 장은 이를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 ⑥ 제5항에 따라 관계 서류의 사본을 받은 관할 시·도지사 및 시 장·군수·구청장은 관계 서류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 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같은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지형도면의 승인 신청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지형도 면의 고시 등에 필요한 서류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
- 제34조(조성실행계획의 실효) ① 사업시행자는 제33조제1항에 따라 조성실행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조성실행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이하 "조성사업"이라 한다)을 시작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시작 기한의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한 번만 그 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시작 기한까지 조성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면 시작 기한의 다음 날에 조성실행계획의 승인은 효력을 잃는다.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조성실행계획의 승인이 효력을 잃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 제35조(조성실행계획의 승인취소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사업시 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성실행계획 의 승인을 취소하거나 이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 1. 사업중단으로 환경 · 미관을 크게 저해할 경우
 - 2. 승인된 조성실행계획과 다르게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승인을 취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 제36조(조성 및 운영비의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특화단지의 조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시설비 및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37조(국·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특화단지의 조성·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국·공유재산을 사업시행자에게 수의계약의 방법에 의하여 대부·사용·수익하게 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국·공유재산의 대부·사용·수익·매각 등의 내용 및 조건에 관하여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8조(인·허가 등의 의제) ① 사업시행자가 제33조제1항에 따라 조성실행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인가·지정·승인·협의·신고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은 해당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33조에 따라 조성실행계획이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허가등이 고시 또는 공고된 것으로 본다.
 - 1. 「경관법」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개발사업 및 건축물의 경관 심의
 - 2.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
 - 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

- 의 점용·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 4.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사용·수익허가
- 5. 「광업법」 제24조에 따른 불허가처분 및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광업권의 취소처분 또는 광구의 감소처분
-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 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 7.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3조에 따른 행정기관의 허가등에 관한 협의
- 8.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국유림의 대부 또는 사용의 허가
- 9.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8조에 따른 도로점용의 허가
- 10.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 11. 「농지법」 제31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등의 변경·해제,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협의,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신고 및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

사용허가협의

- 12.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 61조에 따른 도로점용의 허가
- 13. 「도시개발법」 제9조제5항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에서의 행위의 허가
- 14.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지표조 사 결과에 따른 협의
- 15. 「문화재보호법」 제35조에 따른 허가
- 16.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私道)의 개설허가
- 17.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 조에 따른 사방지(砂防地) 지정의 해제
- 18.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 및 신고
- 19.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 ·신고 및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 20. 「소하천정비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 점용허가
- 21. 「수도법」 제17조·제49조에 따른 수도사업의 협의·인가 및 같은 법 제52조·제54조에 따른 전용수도설치의 인가
- 22. 「습지보전법」 제13조제5항제3호에 따른 습지보호지역에서의

행위승인

- 23. 「온천법」 제10조에 따른 온천개발계획의 승인
- 24.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른 대규모점포의 개설 등록
- 25.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의 허가
- 26.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 27. 「자연환경보전법」 제28조에 따른 자연경관영향의 협의
- 28.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개장허가
- 29. 「전기사업법」 제7조에 따른 발전사업·송전사업·배전사업 또는 전기판매사업의 허가
- 30.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 31.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조에 따른 집단에너지의 공급타당성에 관한 협의
- 32. 「초지법」 제21조의2에 따른 초지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의 허가
- 33.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또는 신고
- 34.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 은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 35.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 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 36.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공사실시계획의 승인
- ② 인·허가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사업시행자는 제33조제1항에 따른 조성실행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신청할 때에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조성실행계획을 제33조제2항에 따라 승인 또는 변경승인하려는 때에는 미리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를 요청받은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 ④ 사업시행자가 조성실행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특화 단지 조성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기본설계도서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함으로써 같은 법 제1 1조 또는 제14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것으로 본다.
-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33조제2항에 따라 조성실행계획을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안에 승인하거나 변경승인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 ⑥ 제1항에 따라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등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경

우에는 관계 법률이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 자치도의 조례에 따라 그 허가등의 대가로 부과되는 수수료와 면허 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면제한다.

- 제39조(수용 및 사용) ① 사업시행자는 조성실행계획에 따른 조성사업 에 필요한 토지와 다음 각 호의 물건 또는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 1. 토지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 2. 토지에 정착한 입목·건물, 그 밖의 물건 및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 3.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
 - 4. 토지에 속한 흙·돌·모래 또는 자갈
 -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성사업의 시행기간 내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의 절차, 그 보상 및 재결신청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 제40조(준공확인) ① 사업시행자는 조성사업에 관한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준공보고서를 제출하고 준

공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준공확인의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자 원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관할 시·도지사, 그 밖의 전 문기관의 장에게 준공확인에 필요한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준공확인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준공확인을 한 후 그 공사가 승인된 내용대로 시행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준공확인증명서를 그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③ 사업시행자가 제2항에 따른 준공확인증명서를 교부받은 때에는 제38조의 인·허가 등 의제규정에 따라 해당 사업의 준공에 관한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 ④ 사업시행자는 제2항에 따른 준공확인증명서를 교부받기 전에는 조성사업으로 조성 또는 설치된 토지 및 시설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준공 전 사용신고를 하거나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 ⑤ 사업시행자는 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조성실행계획의 범위에서 단계별 또는 시설별로 구분하여 준공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
- 제41조(조세 감면 및 부담금 감면의 특례)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특화단지의 개발 및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및

입주기업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의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특화단지 조성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부담금 을 감면할 수 있다.
- 1.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
-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유수면 의 점용료·사용료
-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반시설설치비용
- 4. 「농지법」 제38조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 5.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 6. 「산지관리법」 제19조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 7. 「수도법」 및 「하수도법」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 8. 「자연환경보전법」 제46조에 따른 생태계보전협력금
- 9. 「초지법」 제23조제8항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
- 10. 「하천법」에 따른 하천 점용료・사용료
- 11.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에 따른 환경개선부담금

제42조(전력 등 기반시설의 공급 특례) ① 국가는 특화단지에 대하여 직접 비용을 부담하여 공업용수도시설 및 폐수처리시설(천재지변 등 사고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한 이중화 시설을 포함한다)을 설치하여 공업용수를 공급하거나 다른 수도사업자에게 공업용수도시설을 설 치하여 공업용수를 우선하여 공급하게 하여야 한다.

- ② 「전기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사업자는 특화단지에 필요한 전력을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하여 직접 비용을 부담하여 전기시설(천재지변 등 사고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한 이중화 시설을 포함한다)을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 ③ 특화단지의 원활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항만·도로·용수시설 ·통신·전기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해당 시설을 공급하는 자가 우선적으로 지원하여 야 한다.
- ④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함에 있어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 단서, 제29조 및 제46조에 따른 비용부담 ·시설지원 및 자금지원을 할 수 있다.
-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33조에 따라 조성실행계획의 승인을 받은 특화단지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원활하게 설치하기 위하여 기반시설 추진단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⑥ 제5항에 따른 기반시설추진단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3조(조치요청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특화단지의 조성·관리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 도록 요청할 수 있다.
 - ② 사업시행자는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특화단

지의 조성 · 관리 ·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 제44조(공동연구개발 촉진을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특례) ① 특화단지에서 연구개발 성과를 사업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동연구 및 기술개발 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협의를 하려는 경우에는 특데 적용의 필요성과 세부내용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정 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45조(협력개발사업)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화단지에 입주한 수요기업과 공급기업의 협력을 통한 연구개발 활동, 지식재산권 관리의 지원 및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촉진 등의 협력개발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매년 특화단지기업협력과제를 선정하여 이를 특화단지에 입주한 연구소 및 기업과 협약을 맺어 연구하게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협약의 체결방법, 연구성과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6조(특화단지 운영 성과 확산시책의 수립·시행) 산업통상자원부장 관은 특화단지의 주요 운영 성과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7조 에 따른 시·도 발전계획과 연계하여 특화단지 외의 지역으로 확산

하고 전파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1. 특화단지 안・밖의 대학・연구소 및 기업의 공동연구 활성화
- 2. 특화단지 외 지역으로의 연구개발 성과 이전
- 3. 연구개발 성과 사업화 촉진
- 4. 연구 및 기술 인력의 상호 교류 및 협력 활성화
- 5. 그 밖에 특화단지의 운영 성과를 확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장 국가첨단산업경쟁력강화특별회계

제47조(국가첨단산업경쟁력강화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 ① 국가첨단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 가첨단산업경쟁력강화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 ② 특별회계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운용・관리한다.
- ③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 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및 예수금(預受金)
- 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라 국가첨단산업 관련 사업에서 징 수한 기술료
- 4.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 5. 특별회계 보유자산의 매각수입 또는 운용수입

- 6. 특별회계 소관 예탁금으로부터 발생하는 원리금 수입
- 7. 특별회계 자금의 융자회수금, 이자수익금 및 그 밖의 수익금
- 8. 차입금
-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 외의 수입금
- ④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국가첨단산업 혁신성장 전략을 위한 조사 · 연구 사업
- 2. 특화단지의 조성
- 3. 국가첨단산업 인력양성 기관의 설치 · 운영
- 4. 특별회계의 조성·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 5. 차입금 및 예수금의 원리금 상환
- 6. 그 밖에 국가첨단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지원

제6장 보칙

- 제48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②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 구청장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49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사람은 「형법」 제 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 으로 본다.
 - 1. 첨단산업위원회와 소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 2. 제48조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 위

제7장 벌칙

- 제5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1조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 정을 받은 자
 -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3조에 따른 조성실행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
 - ② 제40조제2항에 따른 준공확인증명서를 교부받지 아니하고 조성 사업으로 조성 또는 설치된 토지 및 시설을 사용한 자는 1년 이하 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5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0조의 위

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5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 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제10조제3항을 위반하여 설치·운영계획 또는 폐지계획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직업교육훈련 과정등을 설치·운영하거나 폐지한 자
 -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6조제3항에 따른 동향조사 전담기관 지정을 받은 자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제31조제5항에 따른 조치에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자
 - 2. 제33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조성실행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
 - 3. 제33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조성실행계획의 변경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조성실행계획을 변경한 자
 -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7조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제37조의4제1항에 따른 산업기술혁신계정"을 "제37조의4제1항에 따른 산업기술혁신계정 및 「국가첨단산업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7조에 따른 국가첨단산업경쟁력강화특별회계"로 한다.